

● 제324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3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4. 6. 28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소라 의원 외 23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24. 4. 3.
- 다. 회부일 : 2024. 4. 8.
- 라. 의안번호 : 1750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공무원 겸직이 문제가 되어 일부 부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겸직 신청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는 등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공무원 겸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임.
-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,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, 겸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,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복무조례를 두고 있어 서울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
겸직 허가 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함(안 제35조제3항의 신설).
- 서울시의회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35조
제4항의 신설).

다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
- (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
- (3)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4.4.12. ~ 2024.4.16.
 - 나) 예고결과 : 없음
 - 2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원안동의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현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,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직에 대해 겸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,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임.

2 겸직허가 시 엄격한 심사 규정 도입(안 제35조제3항)

가. 지방공무원 겸직금지 및 허가

- 지방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에 따라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.¹⁾
 - 다만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1조에 따라 제10조 본문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및 영리목적이 없는 계속성 있는 업무는 ‘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’ 소속 기관 장의 사전허가로 겸직이 가능함.

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(영리업무의 금지)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,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.

1. 공무원이 상업·공업·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

2. 공무원이 상업·공업·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(私企業體)의 이사·감사·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·지배인·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

3.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

4.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

제11조(겸직 허가)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30.>

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
-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정안전부예규 제254호, 이하 “예규”라 한다.)에서는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청으로 의장이 해당 공무원의 업무 내용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.
- (신청)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기반으로 겸직허가 신청.
- (심사)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복무담당 부서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의장(소속 지방자치단체장)에게 보고.
- 이 중, 특히 ‘면밀한 심사’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‘겸직심사위원회’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.
 - ※ 예규에 따라 겸직심사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은 ▲인터넷 개인방송, ▲부동산 임대업, ▲과도한 겸직수익 발생, ▲직무 관련 지식·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, ▲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, ▲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, ▲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.
- (겸직허가 결정) 의장은 해당 공무원의 업무 내용 및 성격 등을 겸직금지 및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.²⁾
 - ※ 2024년 시의회사무처 겸직허가자는 총 11명이며 이 중,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1명이고 그 밖에는 외부 심의회 위원, 대학 강사 등임.

나.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

- 개정안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허가권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있음.
- 예규에서는 이미 이들 직무에 대해,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인·허가 과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

2) 추가적으로 예규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겸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, 겸직 활동을 점검할 수 있음.

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 중 <검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>
(공동주택 입주자 대표, 재건축조합 임원 등)

- 공동주택 등의 관리·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검직허가 후 종사 가능
-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검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검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,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
-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·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검직 불가
-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검직 불가

- 따라서 이들 직무에 대해 검직심사를 엄격히 하여 공무원의 공무수행상 공정성 확보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.
- 다만, 예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외에도 기관·단체 임원, 부동산 임대, 외부강의, 블로그 활동, 야간 대리운전 등 직무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3 검직허가 현황 공개(안 제35조제4항)

-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검직허가 현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, “정보공개법”이라 한다.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며,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의 취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.

- 이와 관련하여, 서울특별시의 「2023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」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중 복무 관련 정보는 공개가능 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,³⁾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식별 정보(성명 등)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경우는 부분공개 하도록 함.
- 특히,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실적 등에 대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부분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.⁴⁾
-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허가제도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중립의무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규제해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, 개정안과 같이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대시민 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.

4 종합검토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 허가 시의 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, 위 대상 직무가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‘엄격하게 심사’하도록 한 것임.

3) 서울특별시, 「2023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」(2022.12.), 169면은 ‘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’에 공무원 복무 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, 휴가일자, 직무수행 관련 휴가사유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4) 서울특별시, 「2023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」(2022.12.), 172면.

- 한편, 예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‘검직심사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의회사무처의 경우 별도의 ‘검직심사위원회’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.
-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향후 검직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하고,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외에도 부동산 임대·블로그 활동 등 검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직무에 대하여 심사 및 허가 시 주의를 다해야 할 것임.
- 검직허가 현황에 대한 공개에 관해서는 현황 공개에 대한 상위법령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,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‘허가 현황’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대시민 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범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부분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정보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.

[참고] 예규에 따른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 사례

(기관·단체 임원)

-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: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[自然人]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-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: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
 - ※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
- 공무원 친목단체 :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·운영위원회 등 의결·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

(공동주택 입주자 대표, 재건축조합 임원 등)

- 공동주택 등의 관리·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
 -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,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-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·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
-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

(부동산 임대)

-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·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
- 다만, 주택·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·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
 -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

(「예비군법」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)

-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'지원'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 - ※ 겸직허가 후 지원하였으나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겸직 허가 취소로 처리
-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겸직 금지

(외부강의)

-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므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에 따라 판단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 본문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

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검직 불허

※ 허가권자는 검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·강의기관 등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

○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

-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되,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 허용

-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,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

-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

- 방송강의,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합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

※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검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,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,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

(기 타)

○ 저술, 번역, 서적출판, 작사·작곡 등

- 1회적인 저술·번역 등 행위는 검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

※ (예)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·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

- 직접 서적을 출판·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(학습지·문제지 등)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

○ 야간 대리운전 :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

○ 블로그 활동

-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·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

-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

※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(예 : 직·간접 광고) 등 금지

○ 모바일 애플리케이션·이모티콘 제작·관리

- 애플리케이션·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·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검직허가를 받아야 함

-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

○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검직금지

※ (예) 다단계 판매업은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

담당 연락처

02-2180-7689